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이준석 · 이종욱  
유상범 · 박준태 · 김미애  
최은석 · 나경원 · 최수진  
서일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,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,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·새벽, 토요일·일요일,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,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 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어린이의 통행량,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으로써,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).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준 등”을 “기준 등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”으로 한다.

다만,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, 토요일·일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<p>구역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<u>기준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-----<u>기준</u>----- <u>기준</u> 등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